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가합103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한혜윤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영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변론 종결2023. 3. 23.

판결 선고2023. 4. 27.

주 문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E 사이에 2018. 11. 19.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E에게 제주지방법원 2018. 12. 13. 접수 제121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와 F 사이에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6. 9. 2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68,96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68,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E 사이에 2018. 11. 19.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E에게 제주지방법원 2018. 12. 13. 접수 제121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주문 제2항 및 피고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96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G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E와 F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6610호로 한정근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1. 'F과 E 등은 연대하여 1,401,199,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F과 E는 위 돈 중 1,8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1. 4. 28.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17. 11. 13. 예금보험공사로부터 E와 F에 대한 위 각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후 양도 통지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취득

1) E는 피고 B과 1982. 5.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02. 11. 10.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같은 달 20.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와 피고 B은 2018. 11.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E는 피고 B에게 2018.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1. 19.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피고 C, D의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취득

1) F의 아버지인 H는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I전 3045㎡'를 소유하던 중 2016. 8. 3. 사망하였는데, H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인 J과 K는 2016. 8. 18. 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처 L 15분의 3, 자녀들 F, M, N, J, K, 피고 C 각 15분의 2)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 C와 F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L, M, N)는 2016.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해준다는 협의(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마친 후 그에 따라 2016. 9. 22.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 합계 15분의 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증여 당시 F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H로부터 상속받게 될 위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15분의 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4) 한편 K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15분의 2를 2017. 6. 7. J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15분의 11, 피고 J은 15분의 4씩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D은 2018. 6. 5. 위 피고 C와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253,000,000원 및 147,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2018. 9. 28.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 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이 법원에 이루어진 감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2021. 12. 14. 기준 합계 517,26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3 내지 1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아파트가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E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가치 있는 부동산이자 자신의 거주지였던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피고 B에게 이전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이 경제생활을 하여 마련한 돈 등으로 매수하였으나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 B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E가 피고 B과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E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P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가 E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E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 B과 E 사이에, E는 대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 B만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며, E는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될 경우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E는 이 사건 아파트를 6,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중 5,700만 원은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2002. 11. 15. P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고, 계약금 300만 원 및 나머지 600만 원도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그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3) E는 2002. 12. 26.경부터 매달 월 38만 원 정도를 대출원리금 등으로 납입해 왔는데, 2013. 10.경부터는 피고 B이 위 금액 상당을 E 계좌로 이체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으로서는 주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대출이자 등을 납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피고 B은 2009경부터 2021년경까지 근로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무렵 피고 B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 B은 당시 부부간에 주택 명의를 남편으로 하는 관례상 이 사건 아파트 명의 및 대출 채무자 명의를 E 명의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매수자금의 대출명의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E의 명의로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1. 20.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여전히 E 명의로 남아 있는 점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사해행위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E, 피고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E와 피고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E의 소극재산 중 E와 피고 B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된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P은행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E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200,000,000
소계	200,000,000		
소극재산	원고 채무	1,820,000,000	
P은행 채무(이 사건 아파트에 2002. 11. 20.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414,860		
소계	1,837,414,860		

이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2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7,414,860원으로 순재산액은 182,585,140원(= 200,000,000원 - 17,414,860원)이다.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가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재산분할비율은 3분의 2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E와 피고 B이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전부를 이전하여 피고 B이 182,585,140원(= 200,000,000원 - 17,414,860원)의 적극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E에게는 원고에 대한 보증금 채무 및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에 관한 대출금 채무만 남게 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분할대상 재산 중 적극재산은 오직 E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뿐이고 피고 B에게는 혼인 전에 취득하는 등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반면, 피고 B이 E의 소극재산인 채무를 분담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은 이루어진 바 없다.

(2) 피고 B은 2009년경 이후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적지 않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 역시 혼인기간 동안 슈퍼마켓이나 중국음식점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고, E가 서귀포에서 어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피고 B이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사를 전담했다는 것으로, 이에 P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시기 중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B이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까지는 E에게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이로써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 마련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 피고 B이 자녀들을 앞으로 부양할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녀들은 모두 협의이혼 당시 성년의 상태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E가 성년이 된 자녀들의 생활공간과 부양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다만 ① 피고 B은 E와 1982. 5. 24. 혼인하여 2018. 11. 6. 협의이혼할 때까지 자녀 3명을 두고 약 36년이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해오던 중, 자녀 3명이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었던 매수자금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 상당부분의 변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던 1,700만원 상당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B이 실질적으로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E는 피고 B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인 다액의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하던 별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등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B과 이혼한 것으로, E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은 이에 대한 위자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B 소득의 상당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소득은 피고 B과 E의 혼인생활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관하여는 피고 B의 기여도가 더 커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이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에도 피고 B이 생활하던 터전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E보다 피고 B에게 더 높은 기여도 내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E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기여도 및 E의 과오에 따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12. 13. 접수 제121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토지가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F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법정상속분 전부를 피고 C에게 이전해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Q이 피고 C를 양자로 입양하여 묘지관리와 제사봉양 등을 맡긴다는 조건부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이전해주기로 했으나, 당시 피고 C가

미성년자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그 아버지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뿐이고, H는 생전에 Q의 위 증여취지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줄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F을 포함한 H의 공동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H의 뜻에 따라 해당 법정상속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해줄 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바, 이 사건 토지는 F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H는 1974. 8. 7.자 증여를 통해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을 이전받고, 나머지 각 1/2 지분은 1993. 11. 15.자 매매를 통해 R, S으로부터 이전받았으며, F은 2016. 8. 3.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각 2/15 지분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런데, Q에게 H가 아닌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증여의 조건인 입양이 실제로 이루어진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와 T, H 사이에 1990. 1. 18.경 '위 재산은 본인(피고 C)의 인수받고 양자 목적으로 관리하되 만약 고의로 관리를 회피할 경우에는 인계자(T)에게 환원시킬 것을 목적으로 조건부로 하여 이에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의 재산인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Q 사후에(Q은 1987. 6. 5. 사망하였다) 그 손녀인 T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Q이 직접 그 명의로 증여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또한 위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Q 집안의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비용을 부담하여 제사를 직접 지냈던 것은 Q이 생전에 의지하던 친족 H로서, Q이 H 본인이 아닌 H의 아들이자 미성년자였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증여할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외에 을나 제2,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C 소유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국, H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는 H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H의 사망으로 F 앞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15 상속지분등기가 각 마쳐졌으므로, 이는 F에 대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구성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F이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에 따라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각 2/15 지분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증여는 F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해의사 및 악의

1) 피고 C, D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Q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증여한 실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F에게는 그 증여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D은 피고 C와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증여가 F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 부분에 관한 판단 F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F은 피고 C와 남매 사이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F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피고 D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서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361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나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D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적정한 시가에 상당한 것이며 실제로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매도인들 중 하나인 피고 C를 알게 되었을 뿐이고 이들 사이에 친인척 등의 인적 관계나 다른 거래관계 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 ③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등기부등본에는 F 명의의 담보에 관한 등기나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지 않아 그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사실, ④ 피고 D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F이나 피고 C와 잘 아는 사이라면 굳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D이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

1) 앞선 인정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8. 9. 28. 선의의 전득자인 피고 D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 C로서는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2) 2021. 12. 1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합계 517,26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로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그 중 F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5분의 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68,968,000원(=517,260,000원×2/15)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하로서 위 사해취소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인 68,96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8,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현미

판사정가원

판사이범휘

별지